KOSHA GUIDE X - 57 - 2012

생산시스템 리스크관리를 위한 원자재구매 지침

2012.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임현교
- 제·개정 경과
- 2012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NM 87117-5670, Air Force System Safety Handbook, 2000
- DHB-S-001, System Safety Handbook, 1999
- MIL-STD-882D, Standard Practice for System Safety, 1993
- 제조물책임(PL)대응 매뉴얼-전기·전자제품분야, 중소기업청, 2002
- 제조물책임(PL)대응 매뉴얼-화학제품분야, 중소기업청, 2002
- 제품안전경영 시스템 매뉴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 KOSHA GUIDE X-1-2011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 X-2-2012 (리스크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 X-3-2012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 X-4-2012 (리스크 평가기법 선정에 관한 지침)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11월 29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OSHA GUIDE X - 57 - 2012

생산시스템 리스크관리를 위한 원자재구매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산시스템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하여 구매되는 원자재의 안전보건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산시스템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반제품 등(이하 "원자재"라 한다)을 구매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생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판매 후 제품생산을 위해 이용되는 산업기기 및 설비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X-1-2011(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원자재 구매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4.1 공급자의 평가 및 선정

X - 57 - 2012

- (1) 원자재의 구매와 관련된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은 업무범위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구매업무는 이에 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2) 원자재의 구입에는 공급자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거래 대상물에 대한 평가 도 이루어져야 한다. 구입품목에 따른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안전보건경영 방침의 확립 여부
-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여부
- (다) 생산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설비 및 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 (라) 공급 시스템의 안전상 결함의 발생 여부 등

4.2 공급자의 관리

- (1) 공급자가 공급하는 원자재의 안전이 곧 구매자가 생산하는 완성품의 안전에 기초를 이루므로 공급자가 공급하는 원자재는 물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2) 관리적 측면에서는 수많은 개별적인 원자재를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제조·가공되는 공정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 관리되어야 한다.
- (가) 거래 대상물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검사항목별 검사주체가 명확 히 정해져야 한다.
- (나) 공급자는 원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된 표준 규정을 제정, 재검토 및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생산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된 공급자의 제조·가공능력은 안전 기준상

X - 57 - 2012

불합격품 및 부적합품의 검출, 불량률, 클레임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4.3 원자재 납품검사

4.3.1 납품검사시의 리스크 관리

- (1) 원자재는 이미 공급자에 의하여 제조 및 가공된 반제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의 의미보다는 완성품 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불합격품 및 부적합품이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납품검사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자재의 안전성은 최종 완성품의 안전성에 직결되므로 사용하기 전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에 한하여 공정에 투입되도록 관리한다.
- (나)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어 불합격된 원자재는 위험의 제거, 위험의 감소, 위험의 대체 등 안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지 않고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 (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원자재는 취급, 보관, 가공, 제조, 보수 등의 공 정에 있어서 생산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쉬운 사항을 명확히 규 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우선순서를 정하여 관리한다.

4.3.2 납품검사 방법

- (1) 납품검사 방법으로는 육안검사, 계기검사 등에 대한 직접 전수검사나 샘플 링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인정기관 승인서를 참조하는 등 간접검사방법 이 활용될 수도 있다.
- (2) 어느 범위까지 납품검사를 할 것인지, 또 검사수준을 변경할 자격은 누구에 게 있는지 명확히 한다.
- (3)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입・반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정확하게 교정된

X - 57 - 2012

도구와 장비를 준비한다.

- (4) 검사결과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원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납품검사 기록은 보존방법, 보존기간, 관리책임자 등의 관리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5) 납품검사의 방법이나 검사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되는 생산시스템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

4.3.3 불합격품 및 부적합품의 처리

- (1)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은 이후 어떠한 제조공정에도 투입되지 않아 야 한다.
- (2) 검사 및 시험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불합격품 및 부적합품은 관리, 개선, 시정조치 및 문제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이후 안전성이 결여된 시스템이 생산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3) 불합격품 및 부적합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염두에 두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사후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 (가) 불채택 또는 폐기
- (나) 생산시스템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 (다) 수리 조건부 특채
- (라) 수리없이 특채 후 모니터링
- (마) 별도의 적용을 위한 재등급 부여
- (4)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생산시스템은 양품과 분리 적재하여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보관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폐기를 위하여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 57 - 2012

- (5)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표식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 때, 불합격품의 식별표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시스템이 불합격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품도 식별 표시되어야 한다.
- (6) 수리 또는 재작업된 생산시스템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문서화된 절차 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 (7)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격된 원자재를 불가피하게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하는 특채의 경우, 반드시 관계된 자 중에서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고 그 책임자의 지시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투입하도록 한다.
- (8) 이 경우에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부적합품에 한하며, 이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 규정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9) 또한, 특채되었거나 수리 후 투입된 원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내용은, 이후 언제든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록되고 관리 되어야 하며, 사후에라도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용 샘플을 남겨 두 어야 한다.
- (가) 투입된 장소
- (나) 투입일시
- (다) 투입 수량 등
- (10) 구매자가 완성품 제조를 위하여 제조자에게 사급자재를 지급하는 경우, 사급자재의 안전성이 불합격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 사실은 구매자에게 보고되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4 보관

(1) 입고된 원자재는 그 품질이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기간, 재고관리, 보존 방법 등의 보관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X - 57 - 2012

- (2) 보관 조건은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3) 구매자가 완성품 제조를 위하여 제조자에게 자재를 지급하도록 계약에 규정된 경우, 시스템으로 사용토록 제공되거나 시스템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구매자 재산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 보관되어야 한다.
- (4) 일반적으로 보관 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원자재 구매계약의 관리

5.1 사양의 결정

5.1.1 구매자가 사양을 지정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사양을 지정하는 경우 시스템안전과 관련하여 구매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거래 대상물의 설계사항 또는 재질, 형상, 크기, 기타 사양 등을 구매자가 결정한다는 내용
- (2)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구매자의 이의에 대한 공급자의 조치
- (3) 필요시 설계,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의견교 환과, 변경시 이미 제조된 거래 대상물의 사후처리 방법
- (4) 구매자와 공급자가 주고받는 기본적 사양 서류 외의 서류는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한다는 내용. 이 때, 거래 대상물과 관련하여 구매 자가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적 사양서류라 함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 다.

X - 57 - 2012

- (가) 거래 대상물 도면
- (나) 거래 대상물 규격
- (다) 검사기준
- (라) 합격·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샘플
- (마) 포장지시서 (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등
- (5)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를 분실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 경우의 책임범위
- (6)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사양서류의 처리

5.1.2 공급자가 사양을 제시하는 경우

구매자는 시스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제시한 거래대상물의 사양, 성능, 기능, 기술 자료 등의 정보를 토대로 거래 대상물의 사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거래 대상물의 설계사항 또는 질, 형상, 크기, 기타 사양 등을 구매자가 결정한다는 내용
 - (가)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시스템 사양서, 카탈로그, 기술설명서 등을 통하여 거래 대상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 (나) 구매자가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자는 상대방이 품질보증 및 사양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거래 대상물을 납품할 수 있는 공급자라 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이 인정결과가 시스템안전상의 모든 책 임까지 구매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X - 57 - 2012

- (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데이터, 부하 특성치를 토대로 안전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시스템을 만드는 구매자이다.
- (2) 사양내용 중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공급자가 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가) 설계사양 및 제조방법 등의 변경점은 관리요령에 따라 협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거래 대상물 중 시스템안전과 관련한 중점관리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 공급자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조, 자재변경, 부품의 국산화 등을 시도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나) 공급자의 의견에 따라 사양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시스템결함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3 거래 대상물의 용도 주지

- (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거래 대상물의 사용용도와, 어떠한 사용자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예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러한 정보는 공급자로 하여금 거래 대상물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 (3) 공급자의 거래 대상물이 사용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산시스템의 제조 또는 막대한 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시스템 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1.4 주의경고 의무

- (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자재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거래 대상물의 가공 또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2)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사양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구매자에게 다음 과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X - 57 - 2012

(가) 구매자의 의무

구매자는 공급자의 지식 및 기술력을 고려하여 거래 대상물의 재질, 가공 또는 제조 공정에 관련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킨다. 만약 구매자가 명시한 주의, 경고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의 지식이나 기술력 등으로 감당할 수 없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마련한다.

(나)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가 사양을 제시하는 경우, 설계 및 제조시 알게 된 안전상의 주의사항, 취급방법 그리고 고장발생시점에서의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주지한다. 주의·경고 사항은 계약서 내에 기재하지 않고 도면, 규격 등의 사양서류에기재하거나 별도의 취급설명서로 작성한다.

5.2 제작

구매자와 공급자는 거래 대상물의 사양을 근거로 생산시스템을 제조·가공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비하여 자재의 지급, 지도협력 및 재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설정한다.

5.2.1 자재의 지급

(1) 구매자가 완성품 제조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사급자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매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지급사유

- (나) 지급 자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에 관한 내용
- (다) 구매자로부터 자재를 수령한 때의 검사와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의 처리절차
- (라) 공급자가 무상으로 자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또는 스크랩 등의 처리방법

X - 57 - 2012

- (마) 공급자가 구매자의 자재에 가공중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제 공한 자재의 불량·결함으로 인하여 거래 대상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 처리절차
- (바) 공급자가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자재의 불량・결함에 대한 책임

5.2.2 지도 및 협력

구매자는 거래 대상물의 제작, 시스템안전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생산관리, 안전보증 등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2.3 재하도급

발주한 거래 대상물을 공급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면 생산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매자가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구매자가 발주한 거래 대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하는 경우의 조치
- (2)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

5.3 사양의 확인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협정된 거래 대상물의 사양은 공급자가 그 거래 대상물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거래 대상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제조공정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구매자 와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3.1 검사

구매자는 거래 대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X - 57 - 2012

포함되도록 한다.

- (1) 검사 결과의 통보 내용 및 시기
- (2) 검사전 또는 검사기간중 구매자의 책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방법
- (3) 발주 거래 대상물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 (4) 공급자의 책임 하에 검사가 완료된 거래 대상물에 결함 등이 발생하여 구 매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의 책임

5.3.2 불합격품의 처리

구매자와 공급자는 거래 대상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양과 상이한 시스템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 (1) 공급자의 거래 대상물에 대한 검사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 (2) 불량품에 대하여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
- (3) 공급자가 결함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 (4) 구매자가 결함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 부품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 (5) 구매자가 지급한 사급자재의 불량·결함에 의하여 거래 대상물에 결함품이 발생한 경우
- (6) 공급자가 취급 부주의 또는 포장사양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3.3 현지검증

거래 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

X - 57 - 2012

필요하거나, 또는 결함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현지검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생산관리, 안전보증 등에 관한 자료 등 안전활동에 관한 공급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2) 구매자가 발주 거래 대상물의 생산, 품질보증 또는 시스템안전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공장설비와 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
- (3) 공급자의 역할

5.4 입고 후 관리

거래 대상물이 구매자에게 입고된 후 보관, 제조공정, 완제품 보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구매자에 의한 출고 후 시스템안전과 관련된 클레임, 품질 클레임 또는 분쟁에 대한 원인구명을 비롯한 손해배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5.4.1 수리 · 개조의 금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납품한 부품을 구매자가 무단으로 수리·개조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굳이 개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이 때 상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구입품의 계약과 별도로 그 책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2 제조물안전보증책임

제조물안전보증책임은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정과 결함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거래 대상물에 관하여 설계·제조 등의 절차에 대한 제조물안전 보증체제를 확립하고, 구매자가 요구하는 안전성, 품질·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허용되는 불량률, 특성의 허용범위, 합격·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샘플 등의 기준

X - 57 - 2012

- (2) 개별계약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제조물안전보증에 있어서 합격 후 또는 특채 시부터 일정기간 또는 그 이후에 불량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 의 책임
- (3) 제조물안전보증책임 기간경과 후라고 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에 따른 결함 이 발견된 경우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4.3 클레임 처리

클레임 발생통지 및 원인구명 주체는 완성품 제조자, 즉 구매자이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 (1) 사용자로부터 생산시스템 안전과 관련한 클레임 또는 품질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구매자의 처리절차
- (2) (1)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원인 구명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 (3)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의 분담
- (4)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분담

5.4.4 원인규명

공급자로부터 납품 받은 거래 대상물이 구매자의 제조공정 중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또는 완제품으로 완성된 후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클레임이 야기되었을 때, 원인구명의 주체 및 구매자와 공급자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명기한다.

- (1) 사용자가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그 시스템의 무결함 입증 및 손해배상을 완성품제조자에게 요구할 때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원 인구명의 책임범위
- (2) 공급자가 공급한 부품 또는 반제품 등에 기인하여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3 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가 원인구명 협조를 요청할 때 공급자의 협력사항

X - 57 - 2012

5.4.5 손해배상

거래 대상물의 결함에 기인하거나 공급자의 책임사항으로 인해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금액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 (1) 공급자가 해당 부품을 납입한 시점에서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을 적용하였어 도 당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2) 구매자가 행한 설계에 따름으로써 당해 거래 대상물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5.4.6 생산시스템 회수

(1) 거래 대상물에 기인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당해 거래 대상물과 관련된 생산시스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수리를 실시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 처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각의 책임 범위에 따라 쌍방간 협의하여 부담을 결정하도록 한다.

5.5 기타

- (1)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해배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제조물책임 관련보험에 누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를 정한다.
- (2)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특정보험사의 제조물책임 관련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6. 구매계약서의 관리

6.1 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

X - 57 - 2012

계약서의 작성방법과 내용, 그리고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1.1 기본계약

- (1) 기본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 (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대하여도 적용된다.
- (3)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도록 한다.

6.1.2 개별계약

- (1) 개별계약에는 거래 대상물의 구매연월일,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그리고 기타 구매조건 등을 정하도록 한다.
- (2) 구매자와 공급자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안전과 관련된 특별조건이나 사양 등에 대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3) 개별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계약 성립·불성립 조건
- (나)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발주된 수량을 1회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6.1.3 계약의 변경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6.2 계약의 해제·해지

X - 57 - 2012

- (1) 계약이행 불능에 의한 경우
 - (가)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 은 경우
 - (다)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라)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 병될 경우
 - (마)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 및 부 수협정과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 우
- (2) 합의 또는 계약 불이행에 의한 경우
- (가) 쌍방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나) 어느 한 쪽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 우
- (다)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고 의나 과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라) 구매자가 거래 대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당기간동안 공급자의 거래 대상물 제조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 대상물의 제조를

X - 57 - 2012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구매자가 공급자의 서류제출, 기타 협조 등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 응하거나, 구매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하청을 시켰을 경우, 공급자의 시스템이 수차에 걸쳐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또는 일정기간 이상 납 품을 불이행한 경우

6.3 기타 사항

해제·해지의 사유가 발생시에 구매자와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책임을 명기한다.

- (1) 구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해제 ·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방법
- (2)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자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3) 해제·해지와 관련된 책임범위